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검토보고

I. 주요내용

○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9조제3항 신설)

Ⅱ. 검토의견

○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병섭)